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⑥ 선학원 설립 배경, 사찰령 공포

1921년 5월 15일 서울 간동포교당(謙洞布教堂), 만공은 보살계 계단이 마련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조선(朝鮮) 중들은 자꾸만 일본(日本) 중처럼 변질이 돼 가고 있던 말입니다. 진실로 불조(佛祖) 정맥을 계승하려는 남자(男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사찰령과는 관계가 없는, 순전히 조선 사람끼리만 운영하는 선방(禪房)을 하나 따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부치게 된 거울시다.

사찰령이 공포된 지 10년 후의 일이다. 사찰령은 조선불교를 일본불교와 합병시킨 조동종맹약과 함께 한국불교의 정통성이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린 또 다른 내선일체(內鮮一體)였다.

정광호는 "선학원이라는 명칭이 ○○사(寺)나 ○○암(庵)이 아닌 일반 명칭 대신 막연하게 '선학원(禪學院)'이라는 위장 칭호를 쓰게 된 것도 만공이 지적한 것처럼 처음부터 일체의 종교정책과 왜색승(倭色僧)의 오염을 철저히 경계한 결과였다"고 하였다.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 창설이나 재단법인 설립, 그리고 '조선불교 선종'의 창종(創宗)의 배경에서도 만공의 지적과 일맥상통함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선학원을 두고 '민족불교의 성지(聖地)'라고 명명한 배경도 일개 종단이나 일부 스님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한국불교의 독자성과 그 존립을 자각한 결과다.

1911년 6월 3일 조선총독부는 전문 7개 조로 구성된 사찰령(寺刹令)을 공포하고, 동년(同年) 7월 8일에는 전문 8개조의 그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사찰령 제3조에 의해 사법(寺法)이 나왔다. 사법은 사찰 운영체적으로서 총칙(總則)·사격(寺格)·주지(住持)·직사(直司)·회계(會計)·재산(財産)·법식(法式)·승규(僧規)·포교(布教)·포상(褒賞)·징계(懲戒)·섬중(攝衆)·잡칙(雜則) 등과 같은 골격을 구성하고 있다.

사법은 조선총독부 종교와 주입이었던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가 일본의 승정(僧政)의 사례를 참작하면서 식민지에 맞도록 초안을 만든 다음, 이를 다시 본산주지로 하여금 작성 제출케 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1911년 9월 18일 총독부의 정부총감에 관동첩 270호로 보낸 통첩에는 사찰령 공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본년(1911) 6월 제령(制令) 7호로써 사찰령을 제정 공포케 함은 조선사찰의 폐해(廢弊)를 막고 그 유지와 존속을 보존하기 위하여 상당히 법령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역면 그대로 이해하면 그동안 탄압과 소외로 일관되어 온 한국의 사찰과 승려들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인을 순량화(純良化)하기 위해 시세(時勢)에 조화로운 포교와 사찰령을 성실히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1916년 1월 3일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역시 당시 30분산 연합사무소의 대표 스님들을 불러 한국불교의 제반정책에 대해 지시하는 자리에서 "조선은 특히 임제종맥(臨濟宗脈)으로서 태고(太古) 이후 5백년을 통일된 종파로 전수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총독은 극히 가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국불교가 지닌 정통성과 독자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가 국가권력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했던 일본불교의 또 다른 속성이 담겨있었다. 요컨대 제국(帝國) 혹은 동양명화를 위해 한국불교가 분투노력하라는 의미로 한국인이 충실한 일본의 신민으로 살

1911년 공포 자주권 박탈

본말사법으로 일체통제

주지의 전횡 토대 만들어

산중공의제 말살의 원인

1926년 승려 '대처식육' 인가

"조선 사람의 선방 만들자"

한국불교 존립 자각의 계기

선학원 설립으로 이어져

아가게끔 한국불교가 앞장서야한다는 것이 사찰령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사찰령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찰을 병합 이전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둘째, 사찰 터와 가람은 지방장관의 허가 없이 전법(傳法)·포교(布教)·법요(法要) 집행과 승려의 거주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총독과 지방장관의 허가 없이는 일체의 수행과 포교, 의식거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셋째, 사찰의 본말(本末)관계, 승규(僧規), 법식(法式) 등의 사법(寺法)을 각 본사(本寺)에서 제정하도록 했고, 또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불교를 본말사법(本末寺法)에 의거하여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고, 사찰의 자주권을 박탈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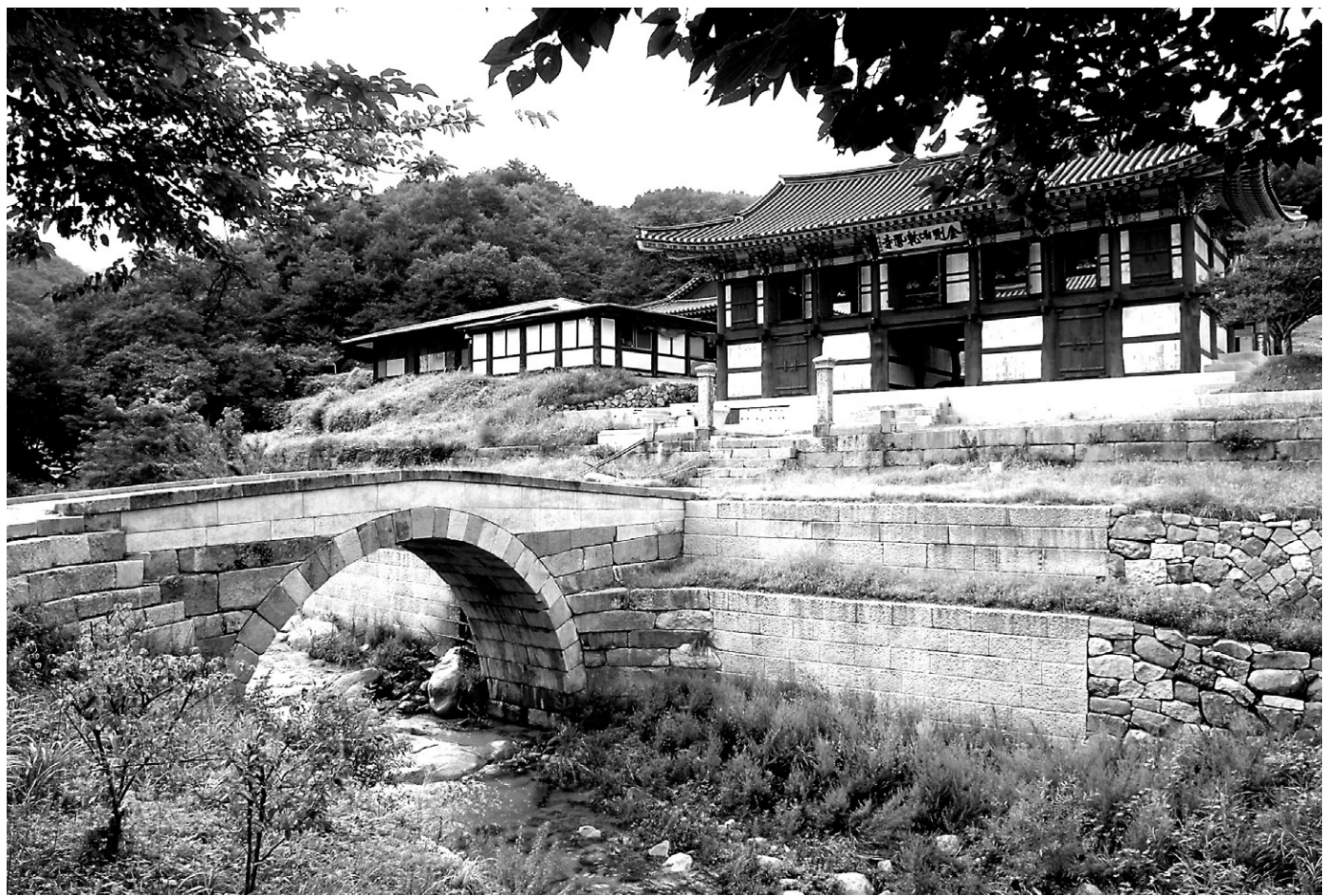
넷째, 사찰의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며, 그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사찰의 행정과 법요(法要)를 책임진다고 했다. 결국 주지제도를 통해 사찰의 재산과 종교 활동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섯째, 각 사찰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土地)·산림(山林)·건물(建物)·불상(佛像)·석물(石物)·고문서(古文書)·고서화(古書畵) 등의 귀중품을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한국사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였다.

나머지는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지금까지도 문화재 약탈과 반환문제가 한일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찰령의 공포와 시행으로 한국불교는 양법미제(良法美制)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조선총독부의 총칙(總規)이 되었다.

흔히 일제강점기의 한국불교를 '주지전횡시대(住持專橫時代)'라고도 한다. 사찰행정의 기본 주체인 주지를 관권(官權)으로 임면(任免)하였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본사 주지의 임명과 해임의 승인권을 조선총독이 장악하고, 말사주지의 임명과 해임의 승인권을 지방의 도장관이 행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지는 관권을 배경으로 사찰의 온갖 실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한국불교의 산중공의제도(山中公議制度)를 없애버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과거 조선의 승가규범(僧家規範)에는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에 관련된 사항과 일의 계획과 진행과정을 판단해 처리하는 영관법회(營辦法會), 기타 일체의 사무를 주관하는 승려가 있어 사중집회(寺中集會)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에야 집행하였다. 이를 곧 원용산림(圓融山林)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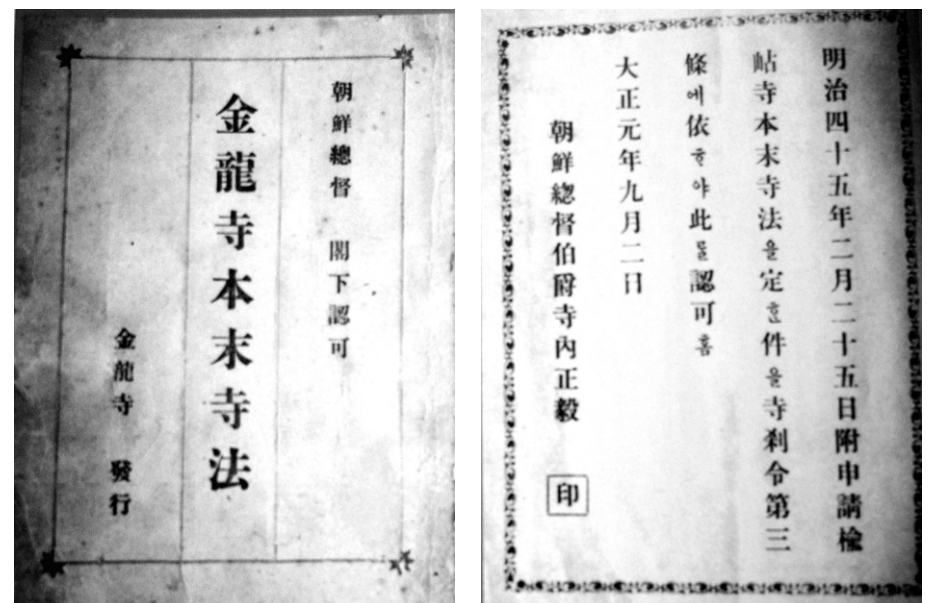
사찰령 공포 이후 폐해는 건봉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시 건봉사는 신종사, 백담사, 낙산사를 관할했다. 하지만 호국사찰의 상징인 건봉사를 일본풍의 절정으로 바꾸었다. 현재 심바리멸주사, 일자형 연못인 연지 등은 이때의 잔재다.

이능화가 규정한 공의제도의 개념이다. 이 지극히 민주적인제도가 점차 빛을 잃어 버린 것이다. 이능화는 주지전횡제도의 폐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예컨대 옛부터 기도불사(祈禱佛事)가 끊이지 않았던 양주의 자재암(自在庵)이 당시에는 절이 빈하여 겨우 유지되었는데, 시주하고 도우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시주물이 주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 사중의 공용(公用)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본산 주지급의 호사(豪奢)는 5천석 지주(地主)부럼질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한편 당시 사법에는 "대처식육(帶妻食肉)하는 자에게는 비구계(比丘戒)를 불허(不許)(사법 58조)"하며, "처자를 사찰 안에 살게 하거나 여인을 절 안에 살게 한 자는 근신의 징계에 처한다(사법 85조)"고 하였다. 사찰령에도 "비구계를 갖춘 자만이 본말사의 주지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처자를 데리고 있는 자는 비구가 될 수도 없고, 사암(寺庵)의 주지가 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주지의 권한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타락한 주지들이 나타났고, 총독부에 대처식육을 인가해달라는 청원이 줄을 이었다.

총독부는 당장 인가하지는 않았지만, 급기야 1926년 10월 승려의 대처식육을 인정했다.



1911년 공포한 사찰령에 기초하여 조선총독부가 제정하고 인가한 김용사본말사법 표지(사진 왼쪽)와 유점사본말사법의 문건(사진 오른쪽)이다.

이에 대해 훗날 선학원의 설립조사인 백용성과 김남전을 비롯한 127명의 선승(禪僧)들은 전국 승려의 수도생활과 불교의 장래를 위해 취처식육(娶妻食肉)하는 등계를 범하는 생활을 금지해 달라고 총독부에 연서하여 진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진정서에서 "오늘 출가대중으로서 청정한 사원에서 아내를 거느리고 고기를 먹으며 자녀를 키우 도량을 더럽히고 참선과 염불과 강당을 전폐(全閉)케 함은 불가(佛法)의 대적(大賊)이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찰령의 공포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고 황폐화시켰던 만행이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오늘날에도 그 망령이 남아있어 한국불교가 지닌 정체성을 저해하고, 불교 본연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하는데 근원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경후(한국불교사리연구회 선임연구원)

성지관음회에서 스님들께만 알려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신도 확보 및 불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롭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님들만 필요하신 방법이며, 스님들만 사찰에서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도들에게 바로 적용하시면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시대에 맞는 새롭고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안내책자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 768-8414~6 FAX 031) 768-8413

212회 3000배 용맹정진 정수리 ~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용천혈 차크라를 열어주어 우주 태양의 기를 받고 지구 땅의 기운을 모아 자동으로 수승화강! 완전 웰빙 심신건강 예방 숨통을 뚫어주어 가슴 시원, 숨 고요, 마음 고요 진짜 힐링 만병통치유 완벽한 절수행 ◆날 짜: 3월 30일(토) 저녁 9시 ~ 3월 31일 아침 7시 ◆준비물: 동참비 2만원 (수련복,기도포,수건) ◆장 소: 법왕정사 울산 연양법당 KTX울산역3분, 서: 울산IC3분, 연양버스터미널1분 홈페이지: www.법왕정사.net ☎ 052)254-7768 / 010.3487.0035 ※청전스님의 용체佛자 붓글씨+다보탑 황금카드+흑단염주+예불예경 선물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10대특약]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10대혜택] ■ 종합 반: 00명 ■ 소수정에 특별반: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10대장점] ■ 자격: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간: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의: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소수정에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소: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10대박사] [우불 김철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직접 지도 • 회장 김철회 박사 • 원장 처 명(선광)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명산재 이수자 한국설법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02)747-1567 / 010-7248-1567